

「평창군공직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1년 05월 26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21년 06월 10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68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1년 06월 10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기획실장)

가. 제안이유

고위공직자의 주식 관련 이해충돌 방지 강화,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「공직자윤리법」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및 자격요건 변경(안 제2조)
- 위원 해촉 규정 신설(안 제6조)
- 의안에 대한 서면의결 규정 신설(안 제6조의2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이현진)

○ 본 조례안은

기존 「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
“**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**”는 「공직자윤리법」을 근거해 설치된 위원회로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처리,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여부확인 및 취업승인 등을 심사·결정합니다.

○ 주요 개정내용으로

안 제2조는에서는

“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” 구성을 5명에서 7명으로 전체 구성을 확대하며, 이중 민간위원부분은 3명에서 5명으로 변경, 민간위원 자격은 기존 법관부분을 법관·판사·검사·변호사로 확대하는 것으로 안 제2조는 상위법인 「공직자윤리법」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.

안 제6조에서는 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

안 제6조의2에서는 의안에 대한 서면의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사유는 ‘긴급 또는 부득이한 경우’로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회의 개최의 어려움으로 확인됩니다.

○ 검토결과, 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수정의결

- 안 제6조의2 서면의결 조항을 삭제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5명”을 “7명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법관”을 “판사·검사·변호사”로, “3명”을 “5명”으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

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
4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	<p>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.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 4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